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27
----------	-------

발의연월일 : 2026. 6. 12.

발 의 자 : 윤건영 · 양부남 · 신정훈
윤준병 · 한준호 · 차지호
이광희 · 김문수 · 정태호
김성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법률 제 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특별시·광역시”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로,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u></p> <p>③ · ④ (생 략)</p>	<p>제38조(금고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특별시·</u> <u>통합특별시·광역시</u>----- ----- -----<u>통합특별시장·</u> <u>광역시장</u>-----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